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4. 2. 12. 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4일

나. 제 출자: 신흥식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4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4. 2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흥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 ~ 제4조)
- 구청장에게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·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-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,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(안 제7조)
- 국어의 보전·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(안 제8조)
-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-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제정 조례는 구민과 공공기관 등에 올바른 국어의 사용법을 준수하게 하고, 아울러 국어 사용의 촉진과 발전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4조에 국어의 발전·보전 및 올바른 국어사용 등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에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·보전을 위한 국어발전계획을 수립· 시행함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등은 한글로 작성 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,
 - 안 제8조에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·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9조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.

-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구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한글 관련 유공 구민과 공무원의 포상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은어 · 비속어 · 인터넷 언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등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 · 훼손됨에 따라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, 아울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검토결과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, 구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, 선언적·권고적 내용이지 만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경향을 반성하고,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, 조문이나 자구 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○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안 제1조 중 "이 조례는"을 "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"로 하며,
-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"시민에게"를 "구민에게"로 한다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의 안 관 련 번호 274 제안년월일 : 2014. 2.

제 출 자:정선희 위원외 1인

1. 수정이유

○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1조 중 "이 조례는"을 "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"로 하며,
-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"시민에게"를 "구민에게"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 중 "이 조례는"을 "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"로 하며,
-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"시민에게"를 "구민에게"로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·표시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등포구와 영등포 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 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 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 에 따라
제8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총괄하도록 한다.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	제8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(원안과 같음)
1.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.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.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.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.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(신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| 번호 | 274 발의년월일:2014년 2월 일 발 의 자:신흥식의워 외 명

1. 제안이유

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이념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 ~ 제4조)
- 나. 구청장에게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·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
- 라.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되,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는 한글과 함께 적도록 함(안 제7조)
- 마. 국어의 보전·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(안 제8조)
- 바.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 또는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 도록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사.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 보존·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○「국어기본법」제4조
- ○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7조
- ○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 : 홍보전산과

라. 자치법규안 : 별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

-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국어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 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국어"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.
 - 2. "한글"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.
 - 3. "어문규범"이란 「국어기본법」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, 표준어규정, 표준발음법, 외래어표기법,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.
 - 4. "공문서 등"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본청·의회·보건소·동 주민 센터·시설관리공단·문화재단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서 공문·공보·

- 시설 명칭·표지판·누리집(홈페이지)·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· 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.
- 제4조(책무)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·보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국어 발전 계획(이하 "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
 - 3. 정신상·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
 - 4.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
 -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·단체 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공문서 등의 작성)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 하여야 한다. 다만,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.

-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.
- 1.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.
- 2.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한자어, 외래어,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 등"이라 한다)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,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,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.
- 제8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.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
 - 2.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

- 3.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
- 4.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예산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0조(교육)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) 지역의 신문,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포상 등)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·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· 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·표시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의 안 관련 번호 274 제안년월일 : 2014. 2.

제 출 자 : 정선희 위원외 1인

1. 수정이유

○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1조 중 "이 조례는"을 "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"로 하며,
-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"시민에게"를 "구민에게"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 중 "이 조례는"을 "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"로 하며,
- 안 제8조 제2항 제1호 중 "시민에게"를 "구민에게"로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·표시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 에 따라
제8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총괄하도록 한다.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	제8조(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) ① (원안과 같음)
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공공기관 강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②